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 안 번 호	362

2024. 1. 25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. 16. / 박경원 의원 등 9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당 현수막의 설치 위치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, 법령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정당 현수막 게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. (안 제2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❍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이 강화됨.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· 답변 요지

❍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❍ 없　　음

6. 심사결과

❍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　음

붙임 :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